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종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212

발의연월일: 2025. 3. 21.

발 의 자: 장종태·박해철·김 윤

장철민 • 박지원 • 김남희

조승래 · 김선민 · 소병훈

문진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·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2013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.

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서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임금제도를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생활임금제도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

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한번호 제921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제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범위에서 임금으로서 근로자 가 최소한의 인간적·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 는 임금(이하 이 조에서 "생활임금"이라 한다)을 정하여 그 지방자 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가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·단체에 위임·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경우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관이나 법인·단체 소속 근로자로서 해당 사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4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임금제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 임금액 이상의 범위에서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·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(이하 이 조에서 "생활임금"이라한다)을 정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. ② 지방자치단체가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기관이나 법인·단체에 위임·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경우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관이나법인·단체 소속 근로자로서해당 사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

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